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5월 4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개정이유

우리구에서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를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“치매안심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하고, 센터 업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센터명칭 변경 (안 제명, 안 전체)
 - (현행)치매지원센터 → (개정)치매안심센터
- 나. 센터의 설치·운영 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제3조)
- 다. 준용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 현행화 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(참조: 의약과, 주소: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, 서대문구보건소 7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(전화:(02)330-1738, FAX:(02)330-1854, E-mail: hyo9507@sdm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)>구정소식>공고>입법예고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